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통계청에 과학적 국정운영 지원을 위한 고령사회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 신성장동력 서비스업 정책 지원의 통계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통계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지역소득통계 속보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 육아휴직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활용 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통계교육원의 정원 1명(5급 1명), 지방통계청의 정원 13명(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통계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2. 14. ~ 12. 1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제24조)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84”를 “68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83”을 “68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73”을 “675”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1,462”를 “1,448”로 하고, 일반직 계 “1,462”를 “1,448”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458”을 “1,444”로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제2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통계청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과 통계청 소속기관 정원 14명(5급 1명, 6급 2명, 7급 4명, 8급 5명, 9급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7장 한시정원</u> <u>제24조(한시정원) ① 중소기업 관련 통계 개발 및 개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2월 28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통계청에 두며, 별표 5의 정원 1명(5급 1명)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통계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② 삭제	<u><삭 제></u>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2]

통계청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84</u>	<u>686</u>	+2
•	•	•	
•	•	•	
일반직 계	<u>683</u>	<u>685</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73</u>	<u>675</u>	+2
•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3]

통계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 정 안	증 감
총 계	<u>1,462</u>	<u>1,448</u>	-14
일반직 계	<u>1,462</u>	<u>1,448</u>	-14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458</u>	<u>1,444</u>	-14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22